

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국세청
National Tax Service

2023년 귀속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Contents

- 0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 02 연말정산 개요
- 03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 04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 05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06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 07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 08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 09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 10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 1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12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01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및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란?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대상인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 일정한 소득세액을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반기별납부자는 반기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징수하며, 이때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도 함께 징수합니다.

매월 근로자에게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를 어떤 기준으로 징수하여 납부하나요?

- ▶ 회사(월별납부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근로소득세를 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금융기관 등에 납부합니다.
 - ※ **반기별납부자**는 상반기(1월~6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를 7월 10일까지, 하반기(7월~12월)에 원천징수한 근로소득세는 다음 연도 1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 ▶ 간이세액표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가 근로자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하는 세액을 **급여수준 및 공제대상 가족수별로** 계산하여 산정한 표입니다.

2023년 (근로자 홍길동)												2024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월	2월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19,520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액 납부 (연간 234,240원 납부)												연말정산 후 결정세액 200,000원	
예시) 월 급여액 200만원(부양가족 없는 경우) : 월 19,520원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1,950원 별도)												34,240원 환급	

매월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를 무조건 간이세액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하나요?

- ▶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시 반드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임의적으로 매월 일정액을 원천징수 할 수 없습니다.
 - * 간이세액표 보다 소득세를 임의적으로 적게 원천징수한 경우 차액을 추가 납부해야 하며, 이 경우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 연말정산 결과 환급금 및 추가납부액의 규모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매월 납부할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금액의 80%, 100%, 120% 중 선택이 가능하므로 신청에 따라 매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선택이 없을 경우 간이세액표 금액의 100% 적용)

02 연말정산 개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등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해 연말정산 하고,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정산한 내용에 대해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근로소득지급명세서도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주요 일정

구분	항목	일정	세부 내용
근로자	일괄제공 신청 확인 (동의)	'23.12.1.~ '24.1.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에 대한 확인(동의)절차 진행안내
	간소화자료 확인 및 내려받기	'24.1.20.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소화서비스 화면에서 소득·세액 공제 증명자료
	공제 증명자료 수집	'24.1.20.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지 않는 영수증은 근로자가 직접 수집 기부금, 의료비, 신용카드 공제는 명세서·신청서와 함께 제출
	공제신고서 제출	'24.2.1.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수동 공제 증명 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사	연말정산 업무 준비	~'23.12.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고유형 선택, 근로자에게 일정과 정보 제공
	일괄제공 희망자 등록 (선택)	~'24.1.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희망한 근로자 명단 등록
	간소화자료 일괄 내려받기	'24.1.20. ~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홈택스에서 간소화자료 제공동의(확인) 완료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일괄 다운로드 및 회사시스템 업로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24.1.20. ~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공제증명 자료, 공제 요건 등 검토 근로자별 세액계산 완료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원천세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	~'24.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3년 2월분 원천세 신고서와 '22년 귀속 지급명세서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선택

※ 회사 사정에 따라 연말정산 일정은 다를 수 있습니다.

03 연말정산 시 회사가 근로자에게 받아야 하는 서류

수집 서류		수집대상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 부양가족이 변동이 없는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됨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부속 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근로자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기부금명세서(기부금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중)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중도 퇴직자 또는 2이상 회사의 근무자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 회사는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및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 및 표준세액공제(13만원)만 적용하여 연말정산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안내

- ▶ 회사는 근로자에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개통 : '24.1.15.부터 서비스 가능
 - ☞ 연말정산간소화(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 ▶ 영수증 제출기관이 연말정산간소화에 제출하지 않은 증명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 직접 수집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연말정산 기초서류인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 수집 안내

《(예시) 부양가족 수에 따라 결정세액이 없는 자》

인적공제 가능 가족 수	독신 (본인)	2인 가족 (본인, 배우자)	3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	4인 가족 (본인, 배우자, 자2)
연간 총급여액	1,408만원 이하	1,623만원 이하	2,499만원 이하	3,376만원 이하

☞ 회사는 부양가족의 인적공제, 4대보험료, 자녀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만으로 결정세액이 없는 근로자에게 별도의 공제 증명서류 제출을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인적공제 증명서류인 주민등록표등본 등은 필요합니다.

04 연말정산 전 비과세 근로소득 중점 확인사항

구분	중점 확인사항
국외근로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급여 중 월 100만원 비과세 (원양어업 선박, 국외항행 선박, 국외 등의 건설현장 근로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외에서 인사, 회계 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해서 월 100만원 까지 비과세를 적용해야하나 월 300만원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해외 연수 등 일시 출국 직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연구보조비 · 연구활동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의 교원, 특정연구기관육성법 등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종사하는 직원이 받는 연구보조비 등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사, 행정, 회계 등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종사자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협회에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신고 없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월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학자금 · 자녀교육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및 자녀교육비 지원액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예퇴직하는 근로자에게 노사합의에 의해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지원하는 자녀학자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나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 회사가 임직원의 자녀를 특정하여 학교장으로 하여금 장학생 등으로 추천하게 하여 지급하는 장학금(학자금)을 비과세로 적용하는 경우
생산직근로자 야간근로수당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이고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에 대해 연 240만원(광산·일용근로자는 전액)까지 비과세 <p>잘못 적용한 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생산직 근로자에 대해 야간수당 등을 비과세 적용한 경우 - 임금협상 등으로 인하여 급여가 소급인상된 근로자의 월정액 급여를 인상된 금액으로 재계산하지 않는 경우 - 광산·일용근로자가 아님에도 연 24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000만원을 초과함에도 비과세를 적용한 경우

05 연말정산 시 공제 증명서류 중점 확인사항

※ 특히, 수동발급 공제 증명서류의 경우 중복공제, 주택자금공제 등의 과다공제를 주의하세요.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과세기간에 새로이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 신청시 중복공제 및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초과 여부를 근로자에게 직접 확인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1.1.) 전 사망자·국외이주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아님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주자(개인)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임대차계약서 사본 및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사본을 통해 임대차계약서의 입주일과 주민등록표등본의 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1개월 이내 차입한 자금인지 확인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등기부등본, 대출계약서 사본 등을 제출받아 주택의 근로자 본인 소유 확인 - 국민주택규모 여부(2013년 이전 차입분) 확인 - 등기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및 저당 확인 - 대출 계약기간이 10년 또는 15년 이상인지, 대출조건(비거치식, 고정금리 등) 확인 - 취득 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2013년 이전 3억원, 2014년~2018년 4억원)인지 확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보유 여부
주택마련저축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여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소득공제 신청하였는지 확인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신용카드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형제자매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배우자 등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제외하였는지 확인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을 연금계좌세액공제 항목으로 잘못 신청하였는지 확인 ● 수동으로 납입확인서를 제출한 경우 중도해지(공제 제외 대상) 또는 본인명의 여부 확인
보험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의 경우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구분	중점 확인사항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존비속 등의 의료비를 근로자 본인이 직접부담해야 함 ● 사내근로복지기금·보험회사(실손보험금)·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보전받은 의료비를 제외하였는지 여부 확인(근로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지 않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교육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학원비는 취학 전(입학연도 1월~2월까지)에 지출한 경우 공제가능 ●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것인지 확인 -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 아님 ●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서 제외하였는지 확인 ●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한 교육비(과세제외)를 제외하였는지 확인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치자금 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의 경우 근로자 본인 명의의 기부금 영수증인지 확인 ● 수동 제출 기부금영수증 상 '일련번호' 유무 확인 - 일련번호가 없는 기부금영수증의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기부금단체가 적격 단체에 해당하는지 영수증에 기재된 근거법령을 통해 확인 - 개별 종교단체의 경우 총회나 중앙회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하였는지 확인 - '고유번호증'의 유무가 적격 기부금 종교단체 여부 판단기준이 아님에 유의 - 사주, 궁합, 택일, 작명 등 대가성 비용을 지출하고 발급받은 기부금 영수증은 공제대상이 아님 -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의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고시 또는 지정 여부 확인. 단, 기획재정부장관 지정이 없더라도 관련법령에서 적격 기부금 단체로 규정한 법인도 있으므로 '기부금영수증 상 기부금단체 근거 법령'을 확인하여 적격 기부금단체 여부 판단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을 통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세대주(세대원 가능) 여부 확인 ●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근로자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서 상 계약자인지 여부 확인 ● 주민등록표등본 상 주소지와 임대차계약서 상 주소지가 동일한지 여부 확인 <p>※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서식 2. 임대차 계약서상 주소지·계약기간 등 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함에 유의</p>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원천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10%를 한도로 가산세를 부담

$$\text{미납세액(과소납부세액)} \times 3\% + (\text{과소·무납부세액} \times 2.2/10,000 \times \text{경과일수}) \leq 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 10%)

06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

원천징수 종합안내 홈페이지 운영

- ▶ 연말정산 뿐만 아니라 금융소득, 사업소득 등 원천징수 전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연말정산 관련 책자 및 동영상 등 제공

- ▶ 연말정산과 관련하여 원천징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책자파일 및 동영상 등을 제공
 - 원천징수의무자를 위한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방법
 - 연말정산 신고안내 해설 동영상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고안내 교육('23년 12월~'24년 2월)

- ▶ 회사의 연말정산 실무자 대상으로 세무서에서 실시하던 연말정산 교육을 유튜브 동영상 자료로 대체

이용방법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상단 유튜브 → 검색란에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안내"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제공

- ▶ 영세 사업자가 연말정산 업무를 홈택스에서 전산처리 할 수 있도록 「지급명세서 직접작성 프로그램」 서비스 제공

이용방법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간편제출)

- ▶ 근로자는 소득·세액신고서와 간소화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회사 등은 이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 연말정산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설 파일 및 조회 프로그램 제공

- ▶ 매월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을 급여 구간별로 미리 계산하여 정리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및 해설서 책자파일을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세금신고 → 원천세 신고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원천징수의무자 신청에 의한 원천세 반기별납부제도 운영

- ▶ 직전 과세기간(신규사업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의 상시 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사업자는 신청(매년 6월, 12월)에 의해 반기별로 원천세 신고·납부 가능

이용방법 홈택스(www.hometax.go.kr)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 일반세무서류신청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07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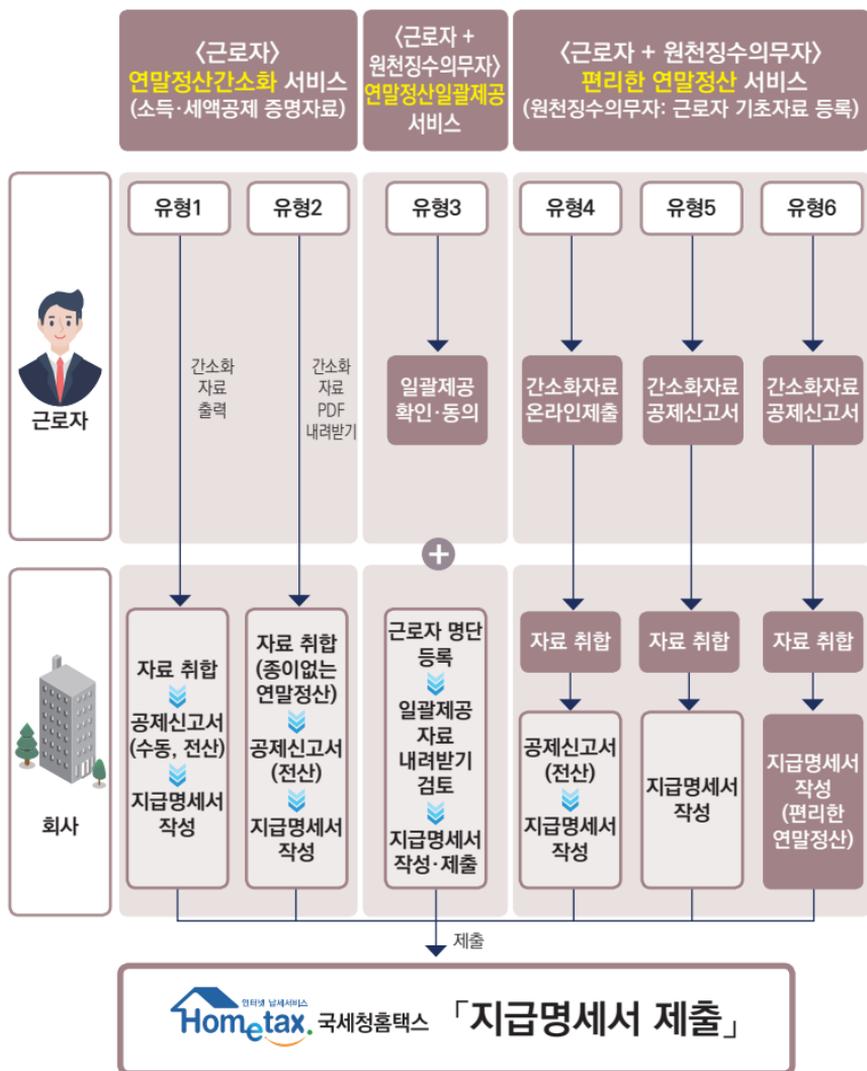
제출서류	제출 내용
<p>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의무자는 '24년 2월 지급분과 함께 연말정산분에 대한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24년 3월 11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원천징수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금액도 신고서에 포함)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원천징수 세액 환급신청서 부표, 기납부세액명세서, 전월미환급세액 조정 명세서 포함)를 제출하여 환급신청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서 상 「②환급세액 조정」란의 '⑳차월이월 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조정환급도 가능
<p>근로소득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24호서식(1)]</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2024년은 3월 11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제출) 홈택스(www.hometax.go.kr)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메뉴(지급명세서·자료 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조회 → 직접작성제출방식)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자체프로그램에 의하여 작성한 전산파일을 변환제출방식으로 제출 (CD 등 전산매체를 이용한 제출) 자가사용 프로그램으로 전산 매체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국세청에서 정한 「지급명세서 전산매체 제출요령」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전산매체로 제출 (서면 작성 제출) 직전연도에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매수가 50매 미만인 자와 상시근로자의 수가 10명 이하인 자는 서면으로 '소득자료제출 집계표'를 부착하여 제출할 수 있음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지급명세서를 기한 내 미제출한 경우, 제출된 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의 1%(3개월 이내 지연제출은 0.5%)를 소득세(법인세)에 가산함 * 가산세 한도 : 5천만원(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1억원)
<p>기부금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5호 서식] 의료비지급명세서 [소득세법시행규칙 별지 43호 서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원천징수의무자는 기부금세액공제, 의료비세액공제를 적용 받는 근로자의 기부금명세서, 의료비지급명세서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에 홈택스 등으로 전산 제출 * 기부금명세서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부속서류로 제출하여야 함

08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유형별 업무 절차

회사의 전산 및 업무환경 등을 고려하여 연말정산 방법을 합리적으로 선택

구분	이용대상자
유형1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출력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2	(근로자)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 PDF파일을 회사에 제출 (회 사)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자체 시스템에서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3	(근로자) 홈택스에서 일괄제공에 대한 확인·동의 (민감정보 삭제 + 부양가족 확인) (회 사) 근로자명단 등록 일괄제공 자료 내려받기, 검토 지급명세서작성·제출
유형4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 시스템에서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5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자료 집계하여 자체 시스템에서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유형6	(근로자)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공제신고서까지 작성하여 회사에 제출 (회 사) 편리한 연말정산에서 지급명세서까지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

※ 유형 4·5·6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이용 가능



※ 유형 ②, ③ : 간소화 자료를 회사의 전산 시스템에 업로드하여 예상세액 계산 가능
유형 ④, ⑤, ⑥ : 국세청 홈택스에서 예상세액 계산 가능

구분	2022년	2023년																																				
식대 비과세 한도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속 종교단체가 종교관련 중사자에게 제공하는 식사나 그 밖의 음식물 ●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과세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 (좌 동) ● 월 10만원 이하 → 월 20만원 이하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2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200만원 ~ 4,6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4,6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표준 조정 <table border="1"> <thead> <tr> <th>과세표준</th> <th>세율</th> </tr> </thead> <tbody> <tr> <td>1,400만원 이하</td> <td>6%</td> </tr> <tr> <td>1,400만원 ~ 5,000만원 이하</td> <td>15%</td> </tr> <tr> <td>5,000만원 ~ 8,800만원 이하</td> <td>24%</td> </tr> <tr> <td>8,800만원 ~ 1.5억원 이하</td> <td>35%</td> </tr> <tr> <td>1.5억원 ~ 3억원 이하</td> <td>38%</td> </tr> <tr> <td>3억원 ~ 5억원 이하</td> <td>40%</td> </tr> <tr> <td>5억원 ~ 10억원 이하</td> <td>42%</td> </tr> <tr> <td>10억원 초과</td> <td>45%</td> </tr> </tbody> </table>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과세표준	세율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 공제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 7,000만원 이하 : 74만원~66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Max}\{74\text{만원} - (3,3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0.8\%), 66\text{만원}\}$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66~5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Max}\{66\text{만원} - (7,000\text{만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50\text{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상향 적용 연장 <p style="text-align: center;">(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 7,000만원 ~ 1.2억원 이하 : 66 ~ 50만원* * (좌 동) - 총급여 1.2억원 초과 : 50~2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ext{Max}\{50\text{만원} - (1.2\text{억원 초과 급여액} \times 1/2), 20\text{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p>▶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 퇴직연금 <table border="1" data-bbox="243 322 564 637"> <thead> <tr> <th rowspan="2">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 colspan="2">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 rowspan="2">세액 공제율</th> </tr> <tr> <th>50세미만</th> <th>50세이상</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000만원)</td> <td>700만원 (400만원)</td> <td>900만원* (600만원)</td> <td>15%</td> </tr> <tr> <td>1.2억원 이하 (1억원)</td> <td></td> <td></td> <td rowspan="2">12%</td> </tr> <tr> <td>1.2억원 초과 (1억원)</td> <td>700만원 (300만원)</td> <td></td> </tr> </tbody> </table> <p>*2022.12.31.까지 적용</p> <p>▶ 연금계좌 납입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 추가납입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p><추 가></p> <p>▶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과세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5세~69세)5%, (70~79세)4%, (80세~)3%, (종신수령)4% ●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p>▶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p> <table border="1" data-bbox="606 322 947 637"> <thead> <tr> <th>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th> <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th> <th>세액 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5,500만원 이하 (4,500만원)</td> <td rowspan="2">900만원 (600만원)</td> <td>15%</td> </tr> <tr> <td>5,500만원 초과 (4,500만원)</td> <td>15%</td> </tr> </tbody> </table> <p>▶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추가납입 항목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p>-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 (1억원 한도)</p> <p>* 부부 중 1인 60세 이상</p> <p>▶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5%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00만원 이하 (4,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1.2억원 이하 (1억원)			12%																								
1.2억원 초과 (1억원)	700만원 (300만원)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연금저축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600만원)	15%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5%																									
자녀세액 공제대상 연령조정	<p>▶ 자녀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부터 30만원) 공제 	<p>▶ 공제대상 연령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p>※ 2022.1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 →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는 점을 감안</p>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확대	<p>▶ 교육비 특별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등 <p><추 가></p>	<p>▶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p> <p>(좌 동)</p> <p>-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p>																									

구분	2022년	2023년
세액공제 대상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일반기부금의 범위 * 공제율: 15%(1천만원 초과분은 30%) ● 「법인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익법인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노동조합법」, 「교원노조법」,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 교원단체, 공무원직장협의회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부금에 해당하는 노조 회비에 회계공시 요건 신설 ● (좌 등) ●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노동조합에 가입한 사람이 납부한 회비 - 아래의 노동조합(A+B)이 「노동조합법 시행령」이 정하는 공시시스템에 직전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가 공표되었을 것 ① 조합비를 직접 납부받은 노동조합(조합원 수 1,000명 이상으로 한정) ② 규약 등에 따라 ①가 납부받은 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받은 노동조합(단위노동조합, 산하조직, 연합단체) ● (좌 등)
노조 회계 공시 결과확인· 통보절차 신설	〈신 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조 회계공시 결과 확인·통보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내용이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 ② 확인 결과를 조합원 및 원천징수 의무자가 공시시스템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공시결과 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는 소득 ● 복권, 경품권, 추첨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10만원 이하의 금품 ● 비과세 기타소득 - 국가유공자 보호급여금,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정착금 등 ● 비과세 근로소득 - 병급여, 산업재해에 따른 요양급여, 배상·보상금 등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전후 휴가 급여 등 - 식사 또는 식사대 ●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 * 과세최저한이 적용되는 기타소득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면제대상 조정 〈삭 제〉 (좌 등) 〈삭 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출범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 (제출기관) 소득·세액공제* 관련 증명 서류를 발급하는 자 * 의료비, 보험료, 연금계좌 납입액 등 ● (제출항목) 연금계좌 납입액,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추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범위 확대 ● (좌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구분	2022년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조정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매월 급여 지급시 급여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	▶ 소득세 과표구간 및 근로소득세액 공제 한도 조정 반영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 장학재단 추가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국가, 지자체 등 ●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추 가〉	▶ 근로 〔좌 동〕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에 대한 기부금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 ●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 (감면율) 5년간 50% ● (적용기한) 2022.12.31.	▶ 근로 〔좌 동〕 ● 10년간 50% ● 2025.12.31.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한도 확대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감면율) 70%(청년은 90%) ● (감면기간) 3년(청년은 5년) ● (대상업종) 농업, 제조업, 도매업, 음식점업 등 ● (감면한도) 연간 150만원 ● (적용기한) 2023.12.31.	▶ 근로 〔좌 동〕 ● (감면한도) 연간 200만원 ● (좌 동)
월세세액 공제확대	▶ 월세 세액공제 ●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공제한도) 750만원 ● (대상 주택)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	▶ 세액공제율 상향 및 대상 주택기준 완화 ● (좌 동) ● 월세액의 15% 또는 17%*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 (좌 동)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득อุป선 세제지원 강화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및 분할납부 특례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 행사시 시가와 행사금액의 차액 ●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분할납부 특례 대상 확대 ● 비과세 한도 상향 : 연간 5천만원→2억원 - 누적한도* :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구분	2022년	2023년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	<p>▶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② 부여 후 2년간 재직, 행사 후 1년간 보유 <추 가> ● (특례배제* 사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p>▶ 대상, 요건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아닌 경우도 포함 ●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③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을 거래하는 전용계좌 개설 (좌 동)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 공제 신설	<p><신 설></p>	<p>▶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거주자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연간 한도 500만원) ● (공제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만원 이하 금액: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금액: 100분의 15 (사업자의 경우, 이월결손금을 뺀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손금 산입)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p>▶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입한도) 연 240만원 ● (적용기한) 2022.12.31. 	<p>▶ 적용기한 연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 동) ● 2025.12.31

구분	2022년	2023년																																								
<p>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p>	<p>▶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data-bbox="243 445 561 780">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td> <td>30%</td> </tr> <tr> <td>④ 전통시장</td> <td>40%</td> </tr> <tr> <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p>*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table border="1" data-bbox="243 883 561 1107"> <thead> <tr> <th rowspan="2">공제한도</th> <th colspan="2">총급여</th> </tr> <tr> <th>7천만원 이하</th> <th>7천만원 초과</th> </tr> </thead> <tbody> <tr> <td>기본공제 한도</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 rowspan="3">추가 공제 한도</td> <td>전통시장</td> <td rowspan="2">300만원</td> <td rowspan="2">200만원</td> </tr> <tr> <td>대중교통</td> </tr> <tr> <td>도서공연등</td> <td></td> <td>-</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5.12.31.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p>▶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table border="1" data-bbox="608 445 926 780"> <thead> <tr> <th>구분</th> <th>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① 신용카드</td> <td>15%</td> </tr> <tr> <td>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td> <td>30%</td> </tr> <tr> <td>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td> <td>30% (40%)</td> </tr> <tr> <td>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td> <td>40% (50%)</td> </tr> <tr> <td>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td> <td>40% (80%)</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 등) • (좌 등) • (좌 등)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30%																																									
④ 전통시장	4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공제한도	총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 공제 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③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④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⑤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p>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p>	<p>▶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p>〈단서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23.12.31. 	<p>▶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p> <p>(좌 등)</p> <p>-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 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p> <p>*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 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2.31. 																																								

구분	2022년	2023년
벤처투자 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에 민간벤처 모펀드 출자 추가	<p>▶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②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③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 (적용기한) '25.12.31. 	<p>▶ 적용대상 추가</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width: 20px; height: 20px; margin: 5px 0;"></div> <p>(좌 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④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 (좌 동) ● (좌 동)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p>▶ 자녀세액공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만 8세 이상의 자녀 	<p>▶ 공제대상자 확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자녀를 공제대상자에 추가
간이지급 명세서 (거주자의 기타소득) 매월 제출 및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등	<p>▶ 간이지급명세서* 제출</p> <p>*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p> <p style="text-align: center;">〈추 가〉</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제출</p> <p>*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p>*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예: 강연료, 자문·고문료 등)</p> <p>▶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대상) 인적용역 관련 기타 소득 ●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1회) 제출 면제

10 근로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구분	내용												
연간 근로소득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 등 (다만, 일용근로소득 제외)												
(-) 비과세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선원법에 의한 식료품, 일·숙직비 등, 월 20만원 이내의 자기차량 운전 보조금(본인명의 임차차량 포함), 제복·제모·제화, 특수분야 종사자의 수당, 천재지변으로 받은 급여 등 ● 국외근로소득 ● 생산직근로자가 받는 야간근로수당 등 ● 연 500만원 이하의 직무발명보상금 ● 그 밖의 비과세 소득 												
총급여액	(=연간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 의료비·연금계좌·월세액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적용시 활용												
(-) 근로소득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th> </tr> </thead> <tbody> <tr> <td>500만원 이하</td> <td>총급여액의 70%</td> </tr> <tr> <td>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td> <td>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td> </tr> <tr> <td>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td> <td>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td> </tr> <tr> <td>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td> <td>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td> </tr> <tr> <td>1억원 초과</td> <td>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td> </tr> </tbody> </table>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총급여액	근로소득공제금액(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	350만원 + 500만원 초과액의 40%											
	1,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	750만원 + 1,500만원 초과액의 15%											
4,5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1,200만원 + 4,500만원 초과액의 5%												
1억원 초과	1,475만원 + 1억원 초과액의 2%												
근로소득금액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기부금, 벤처투자조합 출자·소기업소상공인 소득공제 한도 적용시 활용												
(-) 인적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연간 소득 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 나이요건(장애인은 나이요건 제한 없음) <table border="1"> <thead> <tr> <th>부양가족</th> <th>직계존속</th> <th>직계비속</th> <th>형제자매</th> <th>위탁아동</th> <th>수급자</th> </tr> </thead> <tbody> <tr> <td>나이요건</td> <td>60세 이상 ('63.12.31. 이전)</td> <td>20세 이하 ('03.1.1. 이후)</td> <td>20세 이하 60세 이상</td> <td>6개월 이상 양육</td> <td>제한없음</td> </tr> </tbody> </table>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1.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6개월 이상 양육	제한없음
	부양가족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위탁아동	수급자							
나이요건	60세 이상 ('63.12.31. 이전)	20세 이하 ('03.1.1. 이후)	20세 이하 60세 이상	6개월 이상 양육	제한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가공제 :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추가로 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공제대상</th> <th>경로우대 (70세 이상)</th> <th>장애인</th> <th>부녀자 (부양/기혼)</th> <th>한부모*</th> </tr> </thead> <tbody> <tr> <td>공제금액</td> <td>100만원 ('53.12.31. 이전)</td> <td>200만원</td> <td>50만원</td> <td>100만원</td> </tr> </tbody> </table> <p>*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공제는 모두 해당하는 경우 한부모공제만 적용</p>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53.12.31. 이전)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공제대상	경로우대 (70세 이상)	장애인	부녀자 (부양/기혼)	한부모*									
공제금액	100만원 ('53.12.31. 이전)	200만원	50만원	100만원									
(-) 연금보험료 공제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의 본인 부담금 : 전액 공제												

구분	내용													
(-) 특별소득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공제 · 국민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 전액 ● 주택자금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와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받지 않는 경우 세대원 포함)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13.8.13.이후 지급분부터)을 임차하기 위해 차입한 금액의 원리금상환액의 40% 공제 ② 주택마련저축공제 : 납입액의 40% 공제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3년부터 소득공제 대상 아님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종류</th> <th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공제금액(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td>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이자상환액 전액</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원리금 상환액 × 40%</td> <td rowspan="3"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 4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td> <td style="text-align: center;">저축 납입액 × 40%</td> </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전체(⑦+④+⑤) 한도액 ⑦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td> </tr> </tbody> </table>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 400만원	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 전체(⑦+④+⑤) 한도액 ⑦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공제종류	공제금액(한도액)												
	⑦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이자상환액 전액												
④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원리금 상환액 × 40%	공제한도 : Min(①, ②) ① : ④+⑤ ② : 연 400만원												
⑤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저축 납입액 × 40%													
※ 전체(⑦+④+⑤) 한도액 ⑦ 가 2015.1.1. 이후 차입· 상환기간 연장인 경우 - 상환기간 15년 이상 : 5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and 비거치) : 1,800만원 - 상환기간 15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1,500만원 - 상환기간 10년 이상+(고정 or 비거치) : 300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이월분(2013년 분) 이월된 지정기부금 중 공제한도 내 금액 														
(-) 그 밖의 소득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00.12.31. 이전 가입) ·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연 72만원 한도)의 40% 공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근로(사업)소득 금액</th> <th style="text-align: center;">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 이하</td> <td style="text-align: center;">5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4천만원~1억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300만원</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1억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200만원</td> </tr> </tbody> </table>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근로(사업)소득 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016년 이후 가입분부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대표자의 경우 소득공제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출자·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서 공제(공제시기 변경 신청시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1과세연도를 선택하여 공제) 														

구분	내용		
(-) 그 밖의 소득공제	구분	소득공제액	공제한도액
	2021년 이후 출자·투자분	출자금액의 10%(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천만원 이하 100%, 5천만원 이하 70%, 5천만원 초과 30%)	해당 과세연도 종합(근로)소득금액의 5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소득 공제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공제액 :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초과하는 금액의 15%~80%를 소득공제		
	구분		공제율
	① 신용카드		15%
	② 직불·선불카드		30%
	③ 현금영수증		30%
	④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⑤ 전통신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⑥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80%
* 영화관람료는 2023.7.1.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총급여액에 따른 기본공제 한도 + 한도초과금액 중 전통신장 공제금액, 대중교통 공제금액, 도서·공연 등 공제금액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을 합하여 300만원을 한도로 추가공제 ⇒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200만원을 한도로 추가 공제			
총급여액		추가공제	
		기본공제	추가공제
7천만원 이하		300만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200만원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벤처기업 연 1,500만원 한도) ·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연 1,000만원 한도) · 2023.12.31.까지 임금삭감액(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의 50%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최대 240만원 공제)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공제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종합소득금액 6,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배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과세표준에 합산 *종합한도 대상 소득공제 : 주택자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청약저축 등, 우리사주조합출연금, 신용카드, 벤처투자조합 등(공제율 30·50·70·100% 적용분 제외),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구분	내용																					
(×) 기본세율	과세표준		산출세액 계산																			
	1,4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5%	84만원 + (1,400만원 초과액 × 15%)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624만원 + (5,000만원 초과액 × 24%)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06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06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06만원 + (10억원 초과액 × 45%)																			
	<간편법>																					
	과세표준		산식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 × 6%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15%) - 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24%) - 576만원																					
8천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35%) - 1,544만원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38%) - 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40%) - 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종합소득 과세표준 × 42%) - 3,594만원																					
10억원 초과	(종합소득 과세표준 × 45%) - 6,594만원																					
산출세액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																					
(-)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3.12.31.까지 취업 시 5년(병역 이행 후 1년 내에 복직하는 경우 복직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 복직한 날이 최초 취업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최초 취업일부터 7년이 되는 날)간 90% (200만원 한도) 감면 ● 청년 이외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이 감면대상 중소기업에 '23.12.31.까지 취업 시 3년간 70%(200만원 한도) 감면 																					
(-) 세액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 감면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10년간 50%) ● 정부간 협약에 따라 파견된 외국인의 소득세 감면 ● 외국인 기술자 감면 : 10년간 50%감면 ● 조세조약의 교직자 조항에 따라 교사, 교수에 대한 감면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소득세액공제 <table border="1"> <thead> <tr> <th>산출세액</th> <th>세액공제 금액</th> <th>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0만원 이하</td> <td>산출세액의 55/100</td> <td>·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td> <td>· 7천만원~1억2천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만원</td> </tr> </tbody> </table> <table border="1"> <thead> <tr> <th>총급여액</th> <th>한도액</th> </tr> </thead> <tbody> <tr> <td>3,300만원 이하</td> <td>74만원</td> </tr> <tr> <td>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td> <td>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다만, ①의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td> </tr> <tr> <td>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td> <td>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td> </tr> <tr> <td>1억2천만원 초과</td> <td>①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td> </tr> </tbody> </table> <p>※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시 근로소득세액공제 $\text{근로소득 세액공제액} \times [1 - (\text{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div \text{산출세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공제대상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로 8세이상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 이상은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출산·입양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100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 7천만원~1억2천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만원	총급여액	한도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다만, ①의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①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산출세액	세액공제 금액	한도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100	· 총급여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3천3백만원~7천만원 : 66만원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 + 130만원 초과분 × 30/100	· 7천만원~1억2천만원 : 50만원 · 1억2천만원 초과 : 20만원																				
총급여액	한도액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① 74만원 - ((총급여액 - 3,300만원) × 8/1,000) ② 다만, ①의 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66만원																					
7,000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	① 66만원 - ((총급여액 - 7,000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50만원																					
1억2천만원 초과	①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② 다만, ①의 금액이 20만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20만원																					

구분	내용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직연금·연금저축 납입액의 12% 세액공제(총급여액 55백만원이하는 15%) <table border="1" data-bbox="291 376 946 498"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 10px 0;"> <thead> <tr> <th style="width: 40%;">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th> <th style="width: 40%;">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 <th style="width: 20%;">공제율</th> </tr> </thead> <tbody>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이하</td> <td rowspan="2" style="text-align: center;">600만원 (900만원)</td> <td style="text-align: center;">15%</td> </tr> <tr> <td>45백만원(55백만원) 초과</td> <td style="text-align: center;">12%</td> </tr> </tbody>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만기시 연금계좌 전환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개인형퇴직연금(IRP)·중소기업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 특별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세액공제(12%, 장애인전용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 : 공제대상금액 연 100만원 한도 · 의료비 세액공제(15%,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 총급여액의 3% 초과액이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 연 700만원 한도 -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 대상자로 (재)등록 된 자 : 공제대상 한도 없음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의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본인부담금상한제 사후환급금 수령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 교육비 세액공제(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 대학원 등에 지출한 교육비(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 포함) 전액 공제대상 - 부양가족(나이 제한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생 1인당 연 300만원(초·중·고생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포함) 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공제대상 한도 * 2023년부터 공제대상에 대학입학전행료, 수능응시료 추가 · 장애인(소득 및 나이 제한 없음) 재활 특수교육비 : 전액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비용은 장애아동(만 18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12%
	종합소득금액(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45백만원(55백만원) 이하	600만원 (900만원)	15%							
45백만원(55백만원) 초과		12%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형별 공제한도 이내에서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 없음)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기부금액 합계액이 공제대상(단,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지출분만 공제 가능) - 정치자금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분 15%, 3천만원 초과분 25% 세액공제 - 고향사랑기부금 : 10만원 이하 100/110 세액공제, 10만원 초과 15% 세액공제 - 특례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일반기부금 공제대상을 합하여 1천만원 이하분 15%, 1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이월공제 허용 : 특례기부금(10년), 일반기부금(10년) 								

구분	내용
(-)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미신청 근로자에 적용 (연 13만원) → 정치자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 기부금 세액공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납세조합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세액공제(근로자 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 월할계산) ● 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5.11.1.~'97.12.31. 취득) 주택자금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 세액공제 ● 외국납부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납부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 ● 월세액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연 750만원 한도)의 15% 세액공제(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 17%)
결정세액	<p>(= 산출세액 - 세액감면·세액공제)</p> <p>* 외국인근로자 중 단일세율 적용신청자 = (총급여액 + 비과세 소득) × 19%</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일세율적용 신청자는 비과세, 공제·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 외국인근로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근로자를 말함
(-)기납부세액	주(현)근무지의 기납부세액과 종(전)근무지의 결정세액의 합계액
차감징수세액	<p>(=결정세액 - 기납부세액)</p> <p>※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납부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액을 환급</p>

11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유의사항

- ▶ 동일한 소득의 지급명세서 전본제출에 대해 여러 번 전송한 경우 최종 전송한 자료만 유효하게 제출된 자료로 인정합니다.
- 지급명세서 전자제출 방식(작성·변환방식)과 상관없이 제출할 때마다 자료가 누적되는 것이 아니라 제출기한까지 최종 전송한 자료를 유효한 자료로 인정합니다.
- ▶ 홈택스로 제출하는 자료는 원천징수의무자 사업자번호와 제출자의 로그인 아이디로 제출 유효여부를 판단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여러 개의 부서사용자 아이디를 만들어서 각 부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동일한 사업자번호지만 부서사용자 아이디가 다르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제출한 자료가 모두 유효한 자료로 인정됩니다.
- ▶ 총괄부서사용자는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 목록을 볼 수 있고,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를 취합해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총괄부서 사용자가 자료를 제출하면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는 제출 취소처리되고 총괄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만 유효한 자료로 납습니다.
- 총괄부서사용자가 부서사용자 목록에 보이는 모든 부서사용자 자료를 선택하지 않고 일부만 선택해서 제출하게 되면, 선택하지 않은 부서사용자가 제출한 자료도 삭제되니 총괄부서사용자는 취합할 때 부서사용자들이 모두 제출했는지 확인 후 제출 해야 합니다.
- ▶ 제출기한이 경과한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할 수 없으며 서면이나 전산매체로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이미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삭제하려면 '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하여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기한 마감일 + 2일 경과 전까지만 홈택스로 삭제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 홈택스로 제출 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신고서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신고 삭제요청] 에서[세금신고 삭제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합니다.
- 관할세무서로 제출 시, 홈택스 홈페이지 하단의 [자료실]에서 [세금신고 삭제 요청서 서면 제출 양식]을 다운받아 작성해서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 ▶ 로그인 후 홈택스 창을 여러 개 띄워서 작업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창에서 동시에 작업하면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삭제 될 수 있습니다.
- ▶ 본점사업자가 지점사업자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려면 변환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A레코드는 본점사업자번호를, B레코드에서는 지점사업자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12 더 궁금한 연말정산! 어디서 해결하나요?

정보 유형	서비스 조회 경로
연말정산 정보 안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 개정세법, 연말정산 동영상 교육 등
연말정산 모바일 서비스	[국세청 손택스앱] 1. 간소화 자료 및 공제신고서 제출 2.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3. 연말정산 상담도우미 4.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신청 5. 간소화 자료조회 6. 대화형 자기검증 7. 연말정산 간편계산기 8. 간소화자료를 이용한 예상세액 계산 9. 연말정산 절세주머니 10. 3개년 신고내역 조회 11.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신청내역 확인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기	홈택스(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편리한연말정산 → 예상세액 계산하기
과거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홈택스(www.hometax.go.kr)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 '18년~'23년 및 '24년 연도중 제출한 '24년 귀속분(중도 퇴사자 등) 조회 ('23년 귀속 정기제출분은 '24년 5월부터 조회)
실손의료보험금 지급결과 조회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www.hometax.go.kr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연말정산간소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 하는 간이세액 조회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또는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간이세액표
홈택스 지급명세서 작성프로그램	홈택스(www.hometax.go.kr)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연말정산 상담 서비스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상담센터 : 홈택스(www.hometax.go.kr)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상담하기 → 자주묻는 상담사례 조회 등 ○ 국세법령정보시스템(http://txsi.hometax.go.kr/docs/main.jsp) 	
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번없이) 126 (내선 2-3번)연말정산 세법상담 (내선 1-5번)연말정산간소화 상담 (내선 2-3번)현금영수증 상담 (내선 1-3번)지급명세서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선 5-1번)연말정산 간편계산기 (내선 5-2번)연말정산 간소화 (내선 5-3번)연말정산 세법상담
방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세무서 → 연말정산 상담 ○ 전국 세무서 국세청(www.nts.go.kr) → 국세청 소개 → 전국세무관서 	